

최근 입법예고된 제조물책임(PL)법에 대한 우리 전자업계의 입장

〈본회 생활전자과〉

'99년 7월 13일 정부에서는 지난 '82년 처음 제기된 이후 그동안 많은 논란을 거듭해 온 제조물책임법(PL:Product Liability)을 2001년 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하였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원활히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높여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인 반면, 제조업계 입장에서는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이 굉장히 큰 제도이다.

이번 입법예고를 계기로 소비자측과 제조업계측이 PL법 도입의 적절성 여부를 둘러싸고 전에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PL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권익을 옹호하는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적 현실과 산업계의 환경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되돌아 보고 PL법 도입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생각하며 이 글을 통해 PL법 도입시기 연기의 필요성에 대한 몇가지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제조물책임법이란 ?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법적책임을 규정하기 위해 미국에서 발전한 제도이다.

즉,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의약품 등과 같이 공업적인 제조·가공을 거친 제품이 결함에 의해 소비자·이용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판매업자 등 그 제품의 제조·판매에 관여한 자가 지게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가리킨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은 제품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가 제조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에 한해 배상책임을 지우는 기존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달리 제조자의 주관적인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객관적으로 나타난 제품의 결함에 의해 손해가 유발되었을 경우에도 제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이다.

PL제도는 미국에서 처음 시행된 제도로 1960년대 이후 판례에 의해 확립되었으나 시행과정에서의 부작용으로 산업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90년대 들어 징벌적 배상의 제한과 재판의 분쟁처리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는 등 PL제도를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은 1968년 EC를 중심으로 역내 경쟁조건의 동일화, 유통의 활성화, 소비자 보호 등의 관점에서 제조물책임에 관한 통일 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검토가 시작되었으나, 그 후 15년이 지난 1985년 "제조물책임에 관한 EC지침"이 채택되면서 EC 가맹국별로 입법화에 착수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1975년 제조물책임에 대한 입법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다

가 1985년 EC지침이 공표되고 EC 회원국이 입법에 들어가자 제조물책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다양한 법안이 제시되기 시작한 이후 10여년의 준비를 거쳐 1994년 6월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고 1995년 7월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나라에서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82년으로, 당시 김순규 의원 등 26명의 국회의원이 의원입법 형태

로 입법을 제안하였고 그 이후로도 몇 차례 거론되기는 하였으나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속에 연기되어 오다가 '98년 외환위기로 제조업계가 구조조정, 자금경색, 경기침체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주권강화를 주창한 신정부 출범과 함께 PL법 도입이 다시 추진되었고 금년 7월 13일 제조물책임법을 입법예고하기에 이르렀다.

2. 제조물책임법과 전자산업

지난 '59년 진공관식 라디오 조립생산으로 시작된 가전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과 양질의 값싼 노동력 등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88년에는 우리나라 수출의 10.6%(64억불)를 차지하며 세계 2위의 가전산업 국가로 발전하여 왔다. 그러나 전자산업 발전을 주도하며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가전산업은 '90년대 들어 세계적인 가전제품 보급포화, 임금상승, 동남아 국가 등 후발개도국의 추격으로 성장 둔화세를 보인다. '95년을 기점으로 마이너스 성장세로 반전되었고 특히 '98년에는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내수가 40~50%나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기술의 발달과 함께 정보화가 확산되면서 '90년대 초반에 등장한 정보가전산업은 전자산업 발전과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면서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정보가 전산업 부문의 시장 선점을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시장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가전업계도 '90년 초반부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디지털TV, DVD 등 주요 정보가전제품 및 핵심기술 개발

□ 제조물책임법안(재정부)의 주요내용 □

○무과실 책임제도(안 제2조)

- 제조물결함에 의한 손해발생시 제조자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제조자 책임

○책임주체(안 제4조)

- 제조자, 제조물의 수입자, 제조물의 공급자(유통업자)
- ※ 유통업자의 경우 상당 기간내에 제조자 등을 고지한 경우는 면책

○연대책임(안 제6조)

- 동일한 손해에 대해 2인이상 배상책임자가 있는 경우 연대책임

○소멸시효(안 제10조)

- 손해 및 제조자 등을 안때로부터 3년
- 제조자 등이 제조물을 유통시킨 날로부터 10년

○시행시기(부칙 제1조)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가전산업 수급동향

(단위: 백만불, %)

구분	'85	'90	'95	'96	'97	'98	증감률	
							'90/'85	'98/'95
생산	2,411	10,141	13,874	13,668	10,845	6,923	33.3	△20.7
수출	1,860	5,727	7,861	7,836	6,613	5,438	25.2	△11.6
시판	777	4,232	5,439	4,958	3,820	1,817	40.3	△30.6

※ 자료 : '99한국의 전자산업, EIAK

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디지털TV 방송이 본격화 되는 2000년대 초반 2~3년이 승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조업계에 엄청난 비용이 수반되는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될 경우 업계의 비용부담은 물론이고 이로 인한 중소기업의 기반 약화와 정보가전 관련 기술개발 투자여력의 상실로 정보가전 분야의 우위 선점을 통한 전자산업재도약은 물론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의 국가 경쟁력 확보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3. 제조물책임법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가) 제조원가 상승

제조물책임법 도입되면 기업의 제품안전에 대한 책임이 엄격해져 제품안전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발생이 불가피하며, 또한 제조물책임보험료가 새로운 비용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수익을 압박하게 될 것이다.

실례로 미국의 UL에서 요구하는 안전기준 맞도록 재질을 변경할 경우 세탁기는 20%, 냉장고는 25%나 재료비가 상승하고 이로 인해 제조업계가 추가로 부담해야될 비용은 세탁기의 경우 840억원/년(80만대 생산시), 266억원/년(45만대 생산시)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경우 인력, 자금력 등 경영여건이 취약하여 제조물책임법 도입에 따른 경영부담이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자업계의 경우 현재 자동차와 식품분야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고 있는 리콜제를 전자제품으로 확대할 경우 비용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나) 소송 남발로 인한 인력 및 비용의 낭비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클레임 또는 소송사건은 복잡화·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소송의 승패

와 관계없이 분쟁 해소 과정에서 인력자원 및 비용의 낭비가 심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의 경우 민사소송은 건당 20개월이 소요되지만 기술적인 판단이 추가되는 제조물책임소송은 건당 평균 5년 2개월이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소송의 장기화는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과 집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실무적으로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보존, 자료작성 등 제반 준비에 많은 인원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85만명에 달하는 변호사들이 기업을 상대로 연간 약 60만건 이상의 제조물책임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소송은 '85~'95년 사이에 10배 이상 증가하여 미국 제조업계의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 산업구조 왜곡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되면 기

업은 상대적으로 사고의 위험이 적은 상품만을 선택적으로 생산하게 되고 제품의 성격상 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생산을 꺼리거나 중단하게 되어 산업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제조물책임의 확대에 대비해 항공기 생산이 1979년 17,080대에서 1988년 1,143대로 감소하였으며, 미식축구 헬멧 제조업체수는 1976년 18개에서 1985년 3개사로 감소하였다.

또한, 다이빙보드의 경우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없어 해당 산업이 아예 도태되었다.

라)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약화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될 경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 및 자금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잇따른 파산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게 되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안전설비 확충이나 PL보험 가입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물책임법 시행이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일시에 붕괴시킬 위험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마) 신제품 개발의 지연에 따른 경쟁력 약화

현재 전자제품의 경우 제품기획, 개발, 설계, 생산, 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신제품 개발에 평균 3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될 경우 제품의 안전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협력업체의 제품 안전에 관한 품질을 보완해야 하는 등 제품안전에 관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신제품 개발지연이 불가피하여 제품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4. 정책적 보완 과제

현재 산업계는 외환위기로 인한 어려움속에서도 정보가전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한 21세기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제조물책임법이 실효성 있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보험 활성화, 제조물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기업의 안전시스템 구축, 사고원인 규명 조사체제 구축 등 제반 여건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21세기 정보화사회를 앞두고 외환위기로 기업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고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수용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설사 제조물책임법이 불가피하게 꼭 도입하여야 할 제도라 하더라도 제조물책임법 도입에 앞서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사전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재판의 분쟁처리기구의 확충

제조물책임 소송에 대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송 전단계에서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기존 조직을 정비하고 분야별 중재기구 등을 신설하고 인력을 대폭 확충하여야 한다.

현재 공산품 분쟁조정기구가 소비자보호법에 의거 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되어 있으나 분쟁 발생원인(화재 등) 규명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타 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신속하고 원활한 분쟁 조정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제조물책임소송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절차가 간편하고 기술적 전문지식을 갖춘 재판외 분쟁처리기구를 PL법 시행전에 미리 확충하였다.

또한 각 지방에 소재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제품분야에 관계 없이 상담을 하고 있으며, 통산

성 주관하에 가전제품PL센터 등 각 산업별로 12개의 제조물 책임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둘째, 결함원인 규명기관의 확충

제조물책임 관련 분쟁이 발생 하였을 경우 귀책여부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결함원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핵심 요소로 해당 분야에 대한 기술적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사법시스템하에서는 제품결함에 대한 원인 규명을 전문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결함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화재원인 감식의 경우 화재감식기관은 서울, 경남, 전남 등 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담당하고 있는데 전담인력이 16명에 불과하고 화재사건 외에도 다른 업무수행을 병행하고 있어 화재 관련 제조물책임 소송이 발생했을 때 명확한 화재원인 분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는 소방청이 화재원인 분석기능을 갖고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도 소방청의 화재 분석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나 최소한 3년

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제조물책임보험제도 활성화

제조물책임법이 도입되면 기업을 대상으로한 책임보험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기업의 제조물책임배상 비용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책임부담 여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된 제조물 책임 관련 보험은 생산물책임보험과 영업배상보험이 있으나 보험요율이 특정 회사의 사고빈도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어 사고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을 경우 일괄적인 보험요율 적용이 불가피하여 제조업계 특히,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조업계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PL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품 형태별 사고빈도 통계자료 정립을 통한 보험요율 적정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첫째, 제조물책임법 도입시

기를 최소한 3년 연기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 입장에서 무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제조물 결함에 의한 피해구제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제조업계 측면에서는 제조물책임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대응 비용 발생으로 인한 제조원가 상승,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반 약화, 기업의 신제품 개발 지연 또는 기피 및 이로 인한 산업구조의 왜곡은 물론 제조물책임소송의 남발로 인한 인력과 자원의 낭비 등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

전자산업은 현재 디지털기술의 발달 및 정보화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21세기 유망산업으로 떠오른 디지털TV 등 정보가전 산업 분야의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외환위기 등 어려운 여건속에도 총력을 경주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정보가전산업을 향후 정보화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산업으로 판단하고 기술개발 지원 및 디지털 TV방송 조기실시 등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어렵고 중요한 시점에서 제조업계에 막대한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제조물책임법을 꼭 도입해야 하는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제조물책임시대에 부응한 제품개발과 산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

성하는데 최소한 3년의 준비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가 경제적 측면의 정책 우선순위와 기업의 수용여건 및 제반 환경조성 미흡 등을 감안하여 도입시기는 최소한 3년 정도 연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PL법 시행에 앞서 산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사전적 대책 마련

'82년 이후 동법 도입과 관련해 진행된 여러 차례의 논의 과정에서 제조물책임법 규정의 적절성이나 도입의 당위성 등에 대한 논의는 있었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제조물책임보험의 활성화, 재판의 분쟁처리기구, 결합 원인규명기관의 확보, 제품 안전규제기준의 정비,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등과 같은 제조물책임 시대에 걸맞는 환경 조성 과 산업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한 문제에는 소홀했던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경우 PL관련 산업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제조물책임 제도를 완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제조물책임법 도입시 산업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국회차원의 결의문까지 마련하는 등 PL법 도입 및 시행과정에서 가장 비중있게 고민하였던

문제가 산업피해 최소화 방안이었음을 감안할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 논의는 소비자 입장에서만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조물책임법이 소비자권익을 강화하고 산업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순기능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제조물책임법 도입에 앞서 정부차원에서 재판의 분쟁처리기구 확보, 결합원인 규명기관 확충, 중소기업 대책 마련 등의 작업이 정부차원에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